고 단체에만 적용시켰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함.

나. 주요골자 :

ㅇ센터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

ㅇ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지원방안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제4항)

ㅇ등록 후 1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는 자원봉사자를 제외하고 자원봉사단체로 한정(안 제7조제1호)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4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한다.

제9조 중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7,369명"을 "7,278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7,351명"을 "7,26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의 총수를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로 한다.

제5조중 제7호 내지 제10호를 제8호 내지 제11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제12호 내지 제30호를 제14호 내지 제32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사회교육시설과 학교부설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과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7. 소속 공무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13.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가 초·중등교육시설의 단속 및 폐쇄명령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초등학교(북부)의 서울오봉초등학교란 다음에 서울창림초등학교란을, 초등학교(강서)의 서울염동초등학교란 다음에 서울신기초등학교란을, 초등학교(성북)의 서울오현초등학교란 다음에 서울 일신초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등학교(북부)

번 호	명 칭	위 치
56	서울창림초등학교	서울시 도봉구 창2동 412-4

초등학교(강서)

번 호	명 칭	위 치
58	서울신기초등학교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1274

초등학교(성북)

번 호	명 칭	위 치
31	서울일신초등학교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1-79

별표3중 고등학교의 수도여자고등학교 위치란 중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168"을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70-13"으로 한다.

별표7중 유치원(강서)의 서울양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신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치원(강서)

번 호	명 칭	위 치
9	서울신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127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경비는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하고, 동조제4항중 "기타 센터의"를 "기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지원 방안 등 센터의"로 한다.

안 제7조제1호중 "경우"를 "자원봉사단체"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제6조제3항후단의"를 "제6조제3항의"로 한다.

안 제13조중 "제6조·제7조 및 제12조의"를 "제6조제2항·제7조 및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로 한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나.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다.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라.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마.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바.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사. 재해, 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아.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자.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차.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카.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시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